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주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람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, 관람객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주군 홍보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에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조)
나. 용어의 정비(안 제3조)
다. 관람료 무료 근거 마련(안 제8조)
라. 관람료 면제 및 감면조항 삭제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 및 제25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53471(2018. 9. 27.)〕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-7526(2018. 9. 27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8. ~ 2018. 10. 29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가야산역사신화공원(이하 “공원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”을 “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”로 한다.
제2조 중 “공원”을 “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(이하 “공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원시설”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.
제4조를 삭제한다.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공원의 시설”을 “공원시설의”로 한다.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8조(관람료) 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제9조를 삭제한다.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・관리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----------.
제2조(위치) 공원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일원에 위치한다.	제2조(위치)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)-----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공원의 시설”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. 2. “어린이”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인 사람을 말한다. 3. “청소년”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・고등학생을 말한다. 4. “군인”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(의무경찰, 교도경비대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5. “일반”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,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. 6. “단체”라 함은 유료입장객 중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	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원시설”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.
제4조(운영 및 관리) 공원은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리한다. 다만,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야산야생화식물원과 통합하여 운영・관리할 수 있다.	<삭 제>
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 1. ~ 3. (생 략)	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·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	4. 공원시설의 --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관람료) 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관람권은 일반, 군인, 청소년 및 어린이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권한다. ③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원과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을 관람할 수 있다.	제8조(관람료) 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제9조(관람료 면제 및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1.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.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9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	<삭 제>

유공자와 그 유족 11.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12.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3.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 1. 국가, 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감면을 요구하는 사람 2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·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을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.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관람료(제8조 관련) (단위 : 원) 일 반 / 청소년 및 군인 / 어린이 / 비 고 개인 / 단체 / 개인 / 단체 / 개인 / 단체 2,000 / 1,500 / 1,500 / 1,000 / 1,000 / 800 ※ 가야산역사신화공원과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통합 관람료임.	〈삭 제〉